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931호 2012.11.23.(금)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 1

### 훈 령

-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02호 인천광역시서구가로환경순찰반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 ----- 10

### 예 규

-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 ----- 14

### 고 시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2 - 86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폐기  
고시 ----- 1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0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단, 단체, 법인, 조합, 투자기관 및 구비를 보조받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제4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관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2.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4.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실시한다.
5.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6.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한다.

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④ 복무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6조(감사의 범위)** 자체감사의 범위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선택하여 시행하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규칙·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의결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집행상황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세 및 세외수입 과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15. 구 본청과 동·사업소 또는 실·관·국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그 밖에 산하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前回) 감사 지시사항의 개선 조치사항
19. 그 밖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관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

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감사 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반은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사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에 추가로 편성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는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

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과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확인서 등 징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제12조(감사결과보고)**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반 편성 및 감사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및 감사평가
6.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및 그 밖의 문책사 조서
8.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9. 건의·시정 또는 주의·개선을 요하는 사항
10.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 및 그 밖의 특기사항

② 복무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분지시)** 감사관은 감사의 결과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및 결과보고)** 감사대상기관장 등은 감사 처분 지시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처분지시 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구 산하기관의 장과 구청 각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물품·유가증권 및 기타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감사결과의 공개 및 공개기한)** ①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공개기한은 공개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7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일상감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감 사

NO.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서구 감사관임을 증명합니다.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9.3cm

6.8cm

(뒷 면)

주 의
1. 이 증명은 인천광역시서구 <u>감사담당관</u> 근무공무원에 한하여 휴대합니다.
2. 이 증명은 전출 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3.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서식)

실시년월일	감사기관	감사종류	감사자인

9cm

5cm

인천광역시서구가로환경순찰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02호

### 인천광역시서구가로환경순찰반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서구가로환경순찰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가로환경순찰반운영규정”을 “인천광역시 서구가로환경 순찰반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가로환경의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유관기관 및 해당부서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가로환경 순찰반을 설치·운영 한다.

제2조 중 “순찰반은”을 “가로환경 순찰반(이하 “순찰반”이라 한다)의 임무는”으로 하고, “가로환경전반에”를 “가로환경 전반에”로

하며, “시정케 함을 그 임무로 한다”를 “시정하게 하는 데 있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담순찰반원”을 “반원”으로 하고 “기획홍보실”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전직원”을 “모든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담순찰반은”을 “전담순찰반을 증원할 때에는”으로 하고 “차출한다”를 “선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홍보실 감사범무담당”을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순찰한다”를 “감독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이용,”을 “이용하여”로 하고, “중요노선을 순찰,”을 “중요 노선을 순찰하고”로 한다.

제6조 제목 “순찰대장”을 “순찰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각호와 간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맨홀 파손, 도로굴착방지, 노면요철”을 각각 “맨홀 파손, 도로굴착 방지, 노면 요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폐차방치, 모래함파손”을 각각 “폐차 방치, 모래함 파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가건물, 옥상적치물, 건축공사장미정리, 무허가건물 등”을 각각 “가설건물, 옥외적치물, 건축공사장 미정리, 무허가 건물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중공동변소”를 “공중화장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 소홀등”을 “관리 소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가건물”을 “가설건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각종사고”를 “각종 사고”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순찰사항의 확인 보고 등) 반장은 확인된 여러 문제점에 관

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무부서의 시정조치 등) 제7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주무부서에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처리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환경순찰결과”를 “환경순찰 결과”로 하며, “익월 5월까지”를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본청(사업소포함) 및 동장은 순찰결과”를 “해당 실·과·소·동장은”으로 하고, “구청자”를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환 경 순 찰 지 시 사 항

수 신 :

발신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발 신 :

년            월            일 환경순찰과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년            월            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지시번호	분야별	지 적 사 항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예규)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전 년 성

2012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84호

### 인천광역시 서구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취업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취업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 지침”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근로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일시·간헐적 사무
2. 계절성 사업
3. 기간제근로자가 전담하는 사업이 아닌 행정업무보조 성격의 사무

제31조를 삭제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영유

아의 양육을 위하여”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후단 “허용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해당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를 “해당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날”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2 - 86호

##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폐기 고시

인천 서구 관내에 망실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 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32점, 지적도근점 97점)을 폐기 고시합니다.

2012. 11. 1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개 요

1. 지적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2.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3. 폐기 지적기준점 소재지  
위 치 : 인천 서구 관내(별지 비교참조)

###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지 】

## 지적삼각보조점

일련번호	명칭	계양좌표		중부좌표		비 고
		x	y	x	y	
보1	지적삼각보조점	-3073.50	-3994.68			가정동
보4	지적삼각보조점	-5231.93	-6531.01			원창동
보5	지적삼각보조점	-5229.20	-7501.25			원창동
보6	지적삼각보조점	-4749.86	-7854.45			원창동
보7	지적삼각보조점	-5307.75	-8996.64			원창동
보8	지적삼각보조점	-6177.75	-7792.44			원창동
보9	지적삼각보조점	-6345.32	-6530.66			가좌동
보19	지적삼각보조점	-149.79	-9426.50			경서동
보21	지적삼각보조점	567.23	-6451.71			경서동
보22	지적삼각보조점	2913.43	-5735.15			왕길동
보23	지적삼각보조점	1693.39	-5566.19			검암동
보24	지적삼각보조점	-646.00	-6328.45			경서동
보26	지적삼각보조점	-900.74	-2387.78			공촌동
보32	지적삼각보조점			452327.17	161657.84	원창동
보34	지적삼각보조점			451992.57	167507.96	경서동
보36	지적삼각보조점	4750.75	-7799.43			오류동
보37	지적삼각보조점	5222.78	-8130.57			오류동
보38	지적삼각보조점	5025.48	-6703.80			오류동
보39	지적삼각보조점	4228.07	-6641.25			왕길동
보42	지적삼각보조점	7382.52	-7183.27			금곡동
보43	지적삼각보조점	7629.59	-6419.00			금곡동
보45	지적삼각보조점	6148.28	-4038.31			마전동
보46	지적삼각보조점	5961.30	-4573.22			마전동
보49	지적삼각보조점			453767.23	171354.77	당하동
보50	지적삼각보조점			454693.55	171582.08	마전동
보56	지적삼각보조점	6540.75	-2826.21			불로동
보57	지적삼각보조점	7307.37	-3351.00			대곡동
보59	지적삼각보조점	9158.61	-4935.56			대곡동
보62	지적삼각보조점			451925.11	170605.74	검암동
보64	지적삼각보조점			451819.73	171343.93	검암동
보68	지적삼각보조점	4496.57	-2991.50			마전동
보74	지적삼각보조점	1659.38	-4499.32			검암동

## 지적도근점

일련번호	명칭	계양좌표		중부좌표		비 고
		x	y	x	y	
26	지적도근점	-3962.28	-3150.65			가정동
37	지적도근점	-3957.90	-3416.63			가정동
67	지적도근점	-4563.10	-3170.13			석남동
68	지적도근점	-4690.99	-3176.83			석남동
71	지적도근점	-4667.49	-3655.87			석남동
73	지적도근점	-4775.40	-4084.98			석남동
101	지적도근점	-5365.72	-3932.11			석남동
151	지적도근점	-6499.80	-3638.61			가좌동
159	지적도근점	-6614.71	-3362.02			가좌동
166	지적도근점	-6882.82	-3645.73			가좌동
270	지적도근점	-4910.31	-4026.69			석남동
279	지적도근점	-4555.70	-3286.99			석남동
306	지적도근점	-4001.87	-3105.91			가정동
352	지적도근점	-4561.70	-4239.53			석남동
363	지적도근점	-3906.55	-4340.97			신현동
366	지적도근점	-3721.07	-4207.06			신현동
367	지적도근점	-3961.57	-4191.02			신현동
550	지적도근점			449870.27	171381.86	연희동
604	지적도근점			448826.98	171431.17	심곡동
607	지적도근점			448983.46	171436.38	심곡동
623	지적도근점			449733.10	171662.82	연희동
632	지적도근점			449460.67	171972.81	공촌동
633	지적도근점			449542.86	171944.20	공촌동
648	지적도근점			448861.40	171543.83	심곡동
653	지적도근점			448953.94	171766.33	심곡동
665	지적도근점			449417.21	171968.20	심곡동
681	지적도근점			449408.60	172069.80	심곡동
703	지적도근점			449149.64	171572.99	심곡동
704	지적도근점			449235.65	171578.55	심곡동
708	지적도근점			449360.90	171748.12	심곡동
718	지적도근점			450089.12	172181.19	공촌동
732	지적도근점			449816.24	172266.63	공촌동
746	지적도근점			449886.45	170804.28	연희동
815	지적도근점			449574.11	171073.66	연희동

832	지적도근점			449348.60	170719.73	연희동
839	지적도근점			449187.13	170953.62	심곡동
840	지적도근점			449188.66	170916.54	심곡동
848	지적도근점			448714.05	170955.41	심곡동
1107	지적도근점			455501.22	169240.50	왕길동
4280	지적도근점			451915.46	171989.85	검암동
4312	지적도근점			451792.06	171348.14	검암동
4375	지적도근점			451350.45	172089.25	검암동
4470	지적도근점			454287.24	171408.14	당하동
4473	지적도근점			454643.96	171379.34	마전동
4474	지적도근점			454648.17	171443.48	마전동
4475	지적도근점			454656.03	171568.88	마전동
4574	지적도근점	-3593.86	-4287.46			신현동
4575	지적도근점	-3655.68	-4350.87			신현동
4576	지적도근점	-3661.76	-4275.37			신현동
4983	지적도근점			455817.03	169311.19	금곡동
5001	지적도근점			455614.73	169734.46	마전동
5060	지적도근점			455877.18	169692.55	마전동
5067	지적도근점			455969.25	169725.55	마전동
5068	지적도근점			455974.96	169677.31	마전동
5075	지적도근점			455974.16	169375.07	금곡동
5224	지적도근점			450410.55	169494.12	경서동
5245	지적도근점			453660.11	171329.28	당하동
5401	지적도근점			453567.71	171350.51	백석동
5429	지적도근점	-4265.02	-3335.09			가정동
5667	지적도근점			454067.76	171581.46	당하동
5669	지적도근점			454286.37	171608.14	당하동
5673	지적도근점			454785.05	171583.65	마전동
5674	지적도근점			454817.65	171513.80	마전동
5675	지적도근점			454805.33	171429.93	마전동
5677	지적도근점			454864.75	171377.54	마전동
5685	지적도근점			454740.73	172667.80	당하동
5706	지적도근점			454877.81	173655.28	원당동
5818	지적도근점			454804.02	172774.01	원당동
5837	지적도근점			455025.92	173082.54	원당동
5839	지적도근점			454988.66	173189.21	원당동
5840	지적도근점			455193.85	173239.81	원당동
5897	지적도근점			454989.93	173451.85	원당동
5921	지적도근점			455128.23	173912.35	원당동

5927	지적도근점			454880.64	173663.87	원당동
5936	지적도근점			454554.43	173640.55	당하동
5948	지적도근점			454294.75	173660.65	당하동
5949	지적도근점			454233.70	173664.06	당하동
5957	지적도근점			454274.99	173710.25	당하동
5964	지적도근점			454267.44	173139.87	당하동
5971	지적도근점			454199.32	173543.22	당하동
6017	지적도근점			453829.28	171135.29	당하동
6018	지적도근점			453829.44	171075.48	당하동
6019	지적도근점			453862.44	171049.84	당하동
6020	지적도근점			453881.98	171078.44	당하동
6030	지적도근점			453993.52	171136.26	당하동
6032	지적도근점			453865.59	171180.19	당하동
6033	지적도근점			453832.56	171158.90	당하동
6034	지적도근점			454362.25	170918.63	당하동
6159	지적도근점	-3925.52	-4287.38			신현동
6161	지적도근점	-3916.28	-4118.78			신현동
6167	지적도근점	-4189.81	-4131.87			신현동
6190	지적도근점	-4230.60	-4357.25			신현동
6755	지적도근점			451693.62	164557.84	원창동
6756	지적도근점			451726.77	164767.52	원창동
6758	지적도근점			451735.72	164997.19	원창동
6776	지적도근점			452115.49	167773.90	원창동
7008	지적도근점	-6626.67	-3942.08			가좌동